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440호

의 안 명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의 결 일 2021. 7. 19.

주 문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청 교육감, 국공립대학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7월 19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별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 7.



|| 순 서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10
1. 채용 시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서 여전히 요구 ..	10
2. 기간제교원의 계약 때마다 반복되는 신체검사 ..	16
3. 구직자에 과도한 채용 결격사유 규정 적용	18
4. 건강검진과 채용 신체검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 ..	21
5. 국민생각함 설문 분석결과	24
IV. 개선방안	28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28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30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31
4.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32
V. 조치사항 등	34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추진배경

- 일반국민들이 구직활동 시 사업주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으로 개선 목소리 높음
- ‘채용 건강진단 제도’는 사업주가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폐지('05년)
 - 과거 ‘채용 건강진단’은 실시 의무가 사업주에 있었으며, 진단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5.1월 시행)」은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공무원채용 제외)
-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운영되며, 특히 공정채용에 앞장서야 할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비(非)공무원 신분인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검사를 요구하여 채용결과에 반영,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
- 이에 국가 고용정책인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의 공정채용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21.4~'21.5월) ⇨ 개선안 마련 및 의견조회(6~7월) ⇨ 전원위 의결(7월)

II. 제도현황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민간기업 근로자) 민간부문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
- (공무직 등 근로자) 정부 및 지자체, 각급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이에 해당
 - '공무직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단시간·한시·일용직근로자 포함)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개정·배포('17.12월)
- (각급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훈령, 예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운영

- (공직유관단체 근로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계약직, 공무직, 기간제 포함) 등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공직자윤리법령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 총 1,334개 기관('21년 하반기)

- 공공부문 공무직 등 근로자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실태조사('17년_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지자체 및 교육기관 370개, 공공기관 483개 기관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은 총 415,602명에 달함
- 그러나 조사에 제외된 공직유관단체(약 800개)를 포함 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채용신체검사 개요

- (목적) 고용주(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가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신체상의 능력을 검사
- (근거)

(일반) 국가직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일반) 지방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특정) 경찰, 소방 등	각 개별 법규로 규정
일반근로자(비공무원) <민간기업 포함>	법령 근거 규정 없음(기관별 내규, 사규 등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 ('05.10.7.)

※ "채용시 건강진단"은 고용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폐지(채용 시 건강진단은 고용주가 비용부담 의무)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 보건소,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 ※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도 일정 검체검사(혈액검사 등)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일부 시설·장비기준이 미달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 지정가능
- (검사결과 판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이하 "공무원 신체검사"라 한다)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의사가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 판단
 - 일반 채용 신체검사(이하 "일반 신체검사"라 한다)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 '소견 및 조치사항' 제시

신체검사서 제출 및 임용(치료불가 판단 시 임용불가)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관(2년)내에 임용유예 신청 가능(경력채용의 경우 기관재량)

< 공무원 신체검사 흐름도 >



□ 국가건강검진 제도

○ (목적) 모든 국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

○ (근거)

영유아(0세~5세)	• 국민건강보험법(보험가입자), 의료급여법(수급권자)
학동기(6세~18세)	• 학교보건법(취학), 청소년복지지원법(비취학)
성인기(19세~64세) ※ 일반검진 및 암 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노년기(65세 이상) ※ 일반검진 및 암 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 (성인기 이상 일반건강검진 현황)

- 2년 1회 :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사무직)
- 1년 1회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기타 암 검진 등의 경우 생애 주기를 고려 검진 연령 별도 지정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구분	검사항목	목표질환	검사주기
진찰(문진)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일반
계측검사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복부비만	일반
	시력(좌우)	시각이상	
	청력(좌우)	청각이상	
	혈압측정(수축기/이완기)	고혈압	
영상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폐결핵, 흉부질환	일반
소변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일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등	일반
	공복혈당	당뇨병	
	AST(SGOT)	간장질환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 크레아티닌	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이상지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표면 항체·항원)		B형간염	만 40세
골밀도검사(양방사선, 초음파 등)		골밀도	여성 만 54, 66세
인지기능장애(KDSQ-C검사)		인지기능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생활습관평가(평가표)		-	만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PHQ-9검사)		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해당연령 10년에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육안 진찰 및 상담	구강건강	일반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 건강검진 **일반항목**(계측·영상·소변·혈액검사, 구강검진) 검사비용은 34,380원('21.1월 기준)

○ (검사결과 판정)

- 검사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 의심자의 경우 추가진료 (확진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 **2차 건강진단 실시**(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

< 일반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4)

판정구분		판정기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u>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u>
유질환자		<u>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u>
구강	정상A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주의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료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치료필요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검사항목별 세부 판정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건강검진사업 현황)

- 국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천6백만 명이며('20.1월 기준),

구분	대상('20.1월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건강보험가입자	<input type="checkbox"/>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25,405,4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의료급여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일반건강검진 : 만19~64세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 66세 이상	656,905명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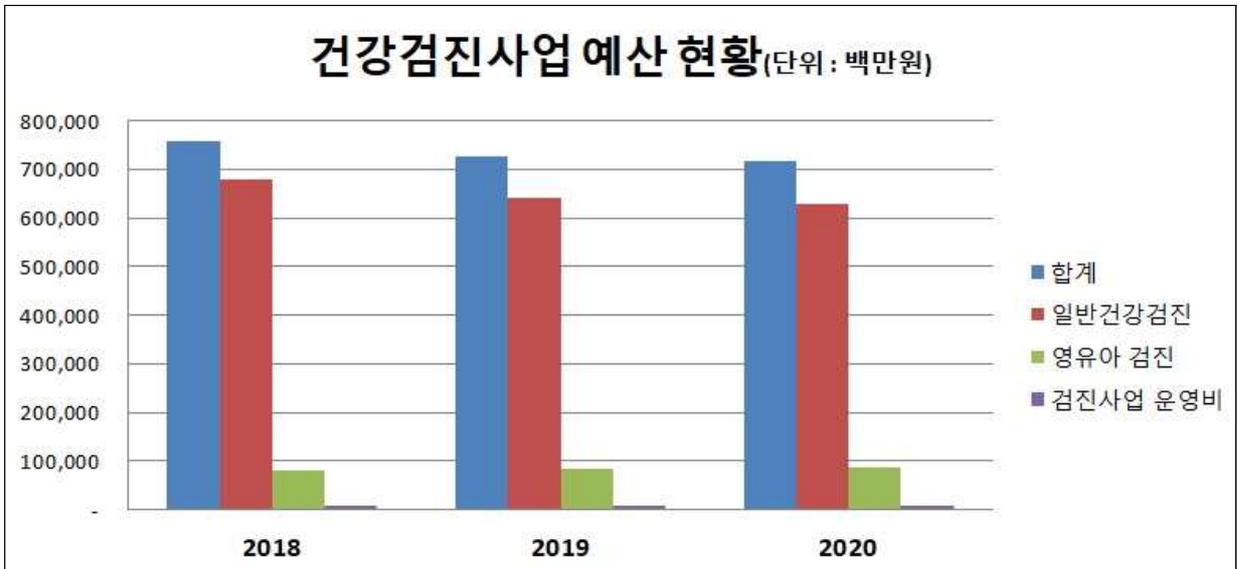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3년간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조원으로 건강검진사업 총 예산액*의 88.6%에 달함

* 건강검진사업 '17~'20년 총 예산액은 약 2조 2천억 원(국고 및 건강보험재정)

< '18 ~ '20년도 일반건강검진 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계	678,466	641,450	629,601	1,949,517
국고	5,266	7,650	6,501	19,417(1%)
건강보험재정	673,200	633,800	623,100	1,930,1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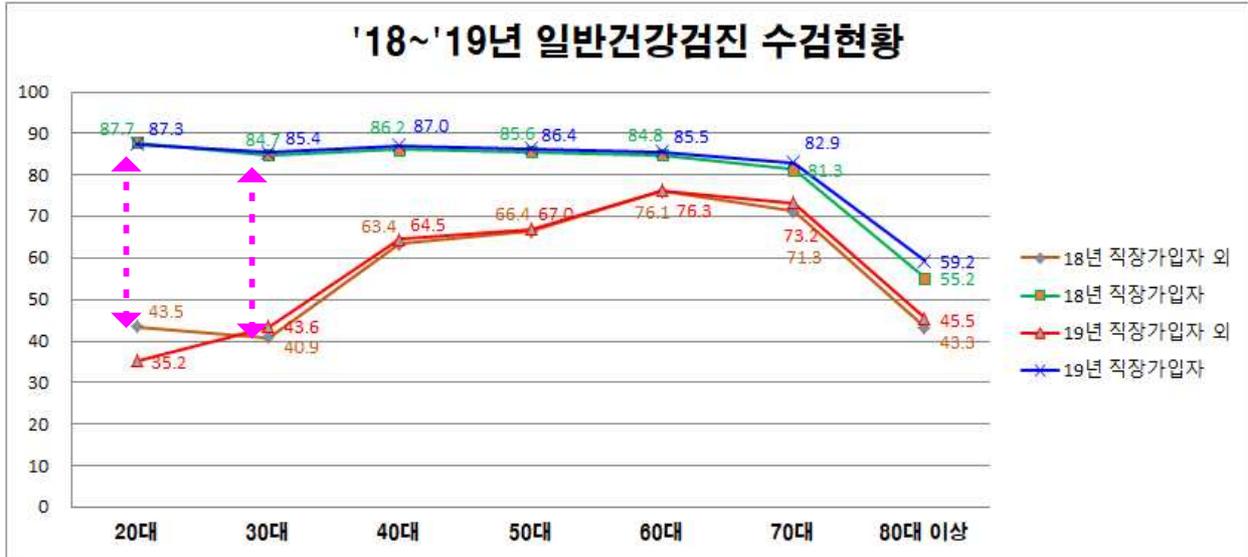


※ (출처) 2020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_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현황)

- '18~'19년도 국내 성인기 이상(20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수검률은 75.5%이나 직장가입자 수검률(85.9%)이 직장가입자 외 수검률(63.9%)보다 22% 높게 나타남
- 특히 20~30대 연령의 경우 직장가입자 수검률이 86.2%인데 반해 직장가입자 외 수검률은 42.2%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

- 이는 20~30대 경제활동 진입기에 직장이 없거나 구직활동중인 국민이 이미 취업한 직장인에 비해 검진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나타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직장가입자 외			직장가입자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2018	20대	67,359	29,293	43.5	1,501,307	1,316,978	87.7
	30대	291,778	119,446	40.9	2,845,465	2,411,180	84.7
	40대	1,766,836	1,120,313	63.4	2,844,126	2,451,092	86.2
	50대	2,245,335	1,490,784	66.4	2,495,789	2,137,349	85.6
	60대	2,157,310	1,640,679	76.1	973,162	825,633	84.8
	70대	1,459,693	1,040,450	71.3	189,913	154,306	81.3
	80대 이상	716,512	310,438	43.3	13,428	7,410	55.2
	합계	8,705,979	5,751,456	66.1	10,887,170	9,325,443	85.7
2019	20대	1,216,641	428,254	35.2	1,443,659	1,260,915	87.3
	30대	1,083,525	471,957	43.6	2,638,762	2,254,720	85.4
	40대	1,808,704	1,167,446	64.5	2,894,724	2,519,524	87.0
	50대	2,180,608	1,461,012	67.0	2,596,286	2,242,967	86.4
	60대	2,235,933	1,706,950	76.3	1,092,264	933,909	85.5
	70대	1,486,136	1,088,122	73.2	213,714	177,197	82.9
	80대 이상	791,342	359,920	45.5	15,804	9,362	59.2
	합계	10,803,904	6,683,728	61.9	10,912,678	9,414,689	86.3

※ (출처) '18~19년도 건강검진 통계연보_국민건강보험공단

Ⅲ. 문제점

1 채용 시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서 여전히 요구

- 중앙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등)과 공직유관단체의 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또는 서류·면접 등을 합격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서'를 여전히 요구
- 권익위가 관련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며, 이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
 - 중앙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82곳 중 80%(68개 기관)가 검사를 요구, 이중 99%(67개 기관)가 구직자에게 검사비용 전가
 - 공직유관단체는 227곳 중 97%(221개 기관)가 검사를 요구하며, 이중 81%(179개 기관)가 구직자에게 검사비용 전가

< ① 각급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요구 현황 >

구분	기관수	채용 신체검사		검사 종류	
		요구	미요구	공무원용	일반용
중앙행정기관	48	35(72.9%)	13(27.1%)	24(68.5%)	11(31.5%)
광역자치단체	17	16(94.1%)	1(5.9%)	11(68.7%)	5(31.3%)
교육자치단체	17	17(100%)	-	11(64.7%)	6(35.3%)
공직유관단체	227	221(97.3%)	6(2.7%)	185(83.7%)	36(16.3%)

< ②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기관의 비용 부담 현황 >

구분	중앙행정기관(35)		광역지자체(16)		시도교육청(17)		공공기관(221)	
	구직자	사용자	구직자	사용자	구직자	사용자	구직자	사용자
기관수(%)	34 (97.1%)	1 (2.9%)	16 (100%)	-	17 (100%)	-	179 (80.9%)	42 (19.1%)

※ 82개 행정기관 및 227개 공직유관단체 신체검사 현황('21.4월 권익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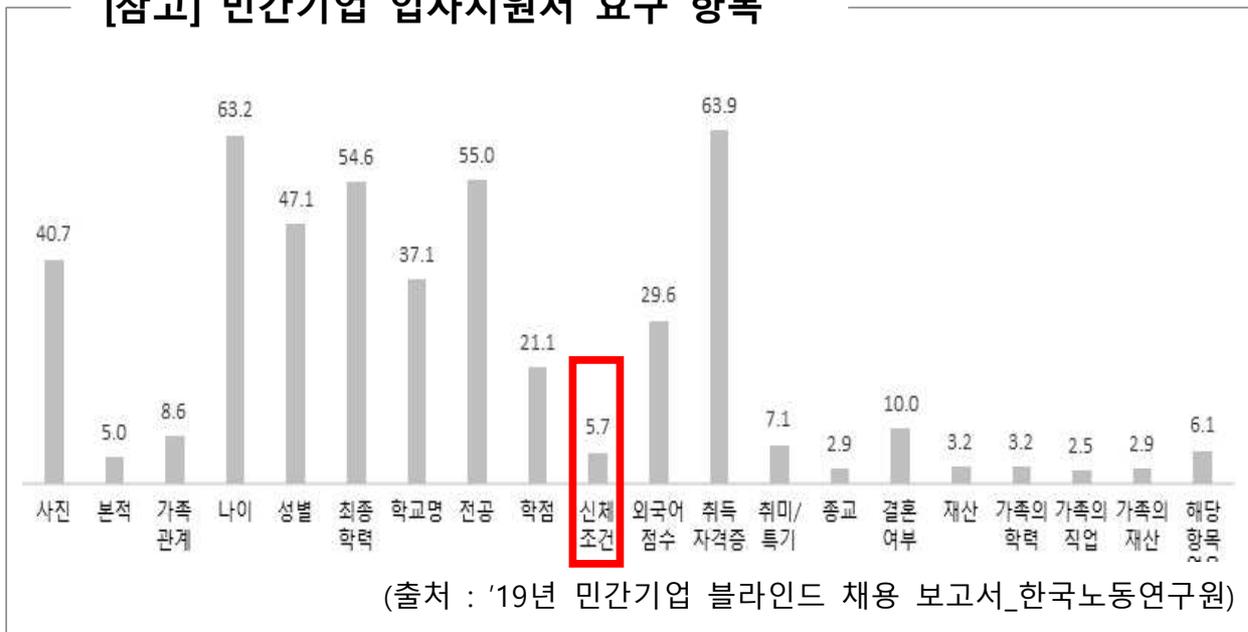
- 또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의 채용공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기관은 소속기관 등에서 요구사례 확인
- 채용기관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한 대부분의 기관도 관련 인사규정 등에 구직자 제출서류로 신체검사서가 포함되어 있고, 기관의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

□ 민간기업도 일부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필요

- 민간기업 또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는 입사지원서에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

*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 제외('17.7월)

[참고] 민간기업 입사지원서 요구 항목



- 국민생감함을 통한 설문 결과, 민간기업 구직에 채용 신체검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국민이 67.3%였으며, 이중 73.1%가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답변

< 국민생각함 '민간기업 채용 신체검사 경험' 설문 결과('21.6.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해진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럼에도 대다수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비공무원 근로자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를 훈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규정하여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검사비용*을 전가
 -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으로 채용신체검사 시 공무원용 4만원, 일반용 3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별 검사비용 상이
 - 일부 기관의 경우는 근거규정도 없이 합격자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명시하여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배*
 - *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개선이 필요한 사례(예시) >

1. 채용 신체검사서를 규정에 명시 한 경우

제00조(채용서류)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① 건강 진단서

2. 채용 신체검사서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연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00조(채용서류)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 계약서 양식에 제출 명시
- ①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 채용공고에 제출 요구
- ① 기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 채용공고에 제출 요구

3. 소속기관 등이 자체 채용 시 요구하는 경우

기관 인사 총괄부서는 채용 신체검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나, 기간제 채용 등의 권한 위임을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이 자체 채용 시 관행적으로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신체검사서 요구

[참고] 채용절차법 법령 해석 의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 자료 및 입증자료(서류전형 등)로 제출토록 해서는 안 됨
- 동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채용예정자 포함)
- '채용신체검사서'는 동 법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
(21.4월 고용노동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 특히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 제출에 신체검사서 등을 요구하면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며,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1년 임에도 단기 계약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계약 시마다 유효기간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검사 결과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관련 민원사례 》

-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원서접수 첫 단계부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서도 부담인데, 아직 합격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서류전형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함(국민신문고, 2021.2)
- □□시 기간제(단기)근로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서(3개월 이내)를 요구 하는데, 합격도 되기 전에 채용 신체검사를 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많음(국민신문고, 2020.7)

<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 요구 사례 >

기간제근로자(체육강사) 채용공고

단시간근로자(방역) 채용공고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 - 29호

- 배드민턴 배분제 위탁강사 모집 -
최종합격자 및 임용등록계획 공고

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 배분제 위탁강사 모집 최종합격자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합격자 명단

분 야	합 격 자 명 단
배드민턴 배분제 위탁강사	8002 이 ○

□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21. 4. 20.(화) ~ 4. 26.(월) <9:00~18:00>
- 등록장소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평일 점심시간(12시~13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임용후보자 등록 불가

3. 제출서류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붙임문서 활용, 사진부착)
-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각 1부(붙임문서 활용, 사진부착)
- ▶ 기본증명서(상세) 2부(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원본)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소 또는 병 의원급, 사진부착면에 압인 체인확인/의료기관장 직인 없으면 무효) 1통

공단 자원순환사업단 공고 제2021 - 23호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공고

공단 자원순환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공단 자원순환사업단장

1. 최종합격자

구 분	분 야	합격자
기간제근로자	현업보조원 (매립장 영향지역방역)	문
기간제근로자	현업보조원 (매립장 영향지역방역)	백
기간제근로자	현업보조원 (매립장 영향지역방역)	하
기간제근로자	현업보조원 (음식물찌꺼기 등 운반처리)	성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발급처 : 동주민센터)
- 신체검사서(당해연도 발급분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3. 채용 결정

-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서 등 심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채용결정. 끝.

2 기간제교원의 계약 때마다 반복되는 신체검사

- 각급 교육청(학교) 등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공무원법 적용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신분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 등과 달리 근로기간이 1년 이내 짧은 경우 몇 개월 단위로 계약(채용)을 하며, 계약 때마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어려움 호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기간제교원을 채용(계약)할 때마다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 요구

<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현황 >

구분	기관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요구	미요구	구직자	사용자
시도교육청	17	17(100%)	-	17(100%)	-

- 다수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로 '동일근무지(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경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충남 교육청 등 10개
 - 기간제교원의 근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변경, 비연속적 계약관계, 2년 1회의 건강검진 등으로 제도적 효용성에 한계

□□□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18.3.~'20.4) 4,642명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계약) 하였으나, 동일근무지 연장계약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건강검진결과 대체 등은 7.6%(354건)으로 매우 저조 ('21.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규직 교원, 공무원 등의 경우 최초 임용 때 채용 신체검사로 적격을 인정받은 후 장기간 휴직·연수 등 근로의 공백에도 추가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며,
 - 특히 국가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채용 시 6개월 이내 퇴직자는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데 반해, 기간제교원은 같은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 받으면서도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별로 불만 팽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 민원사례 》

- 기간제교사들도 정교사들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매년 계약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함. 정교사들은 건강검진만으로 적격을 확신 하면서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불합리한 권리침해에 해당함(국민신문고, 2021.2.)
- 방과후 강사는 매년 채용되는 방식으로 채용신체검사도 매년 받아야함. 아무리 비정규직이라지만 검사비용도 부담이 되고 검사를 받으러 가고, 결과서 받으러 또 한번 병원에 가야함. 정규직 선생님도 매년 이렇게 신체검사를 받는지?(국민신문고, 2020.1)
- 중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강사신분으로 3~4만원의 신체 검사 비용도 부담이고, 검사결과가 좋지 않으면 채용이 안되는 데 이는 고용주를 위한 검사이며 피고용인이 전액 부담하고 검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국민신문고, 2019.2)

3

구직자에 과도한 채용 결격사유 규정 적용

- 대다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정신적 이상’을 규정

▶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17.12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제25조(해고) / 행정기관 제45조(해고)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 ※ 공무원의 경우 질병이 직접적인 해고(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질병) 휴직기간이 끝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70조)
- 또한 재직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유질환자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질병휴직 등 근로자 보건관리 제도를 운영
- 그럼에도 다수의 기관이 채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 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과도하게 구직기회를 제한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채용 신체검사를 운용하는 289곳 중 77.9%인 225개 기관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 해당 검사결과를 구직자 채용심사에 반영

< 기관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현황 >

구분	중앙행정기관(35)		광역지자체(16)		시도교육청(17)		공공기관(221)	
	공무원용	일반용	공무원용	일반용	공무원용	일반용	공무원용	일반용
신체검사 요구기관	24 (68.5%)	11 (31.5%)	11 (68.7%)	5 (31.3%)	11 (64.7%)	6 (35.3%)	179 (80.9%)	42 (19.1%)

※ 82개 행정기관 및 227개 공공기관 신체검사 현황('21.4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준용 예

- ① 각급 기관의 해당 인사관리규정(훈령, 예규, 조례, 사규 등)에 채용 결격 사유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규정
- ②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에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명시하거나, 채용 공고 시 공무원 신체검사서 만을 인정하는 경우

- 공무원의 경우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의 특수성, 신분의 보장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그 책임과 기준이 다름에도
 - 공공일자리는 이유만으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까지 엄격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_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고혈압성 응급증, 이비인후·흉부·심장·혈관·장기 및 내장·생식비뇨기·내분비·혈액·신경계통·팔다리·귀·눈·정신 등의 모든 질환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기준'의 질병이 있는 자라 하여도 임용유예기간내(2년)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가능할 경우 치료 후 임용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 그러나 각급 기관들은 구체적 구제방법도 없이 비공무원 채용에 공무원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고 있고,
 - 대부분의 질병이 의료기관 치료와 약물복용에 따른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함에도, 직무상 근로자의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치 않은 직종(사무직 등)의 근로자까지 구직기회를 제한할 우려

- 이는 과거 근로자의 질병을 이유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05.10월) 및 고용정책기본법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취지에 위배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고용정책기본법 법령 해석 의견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 채용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검사(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21.6월 고용노동부)

< 공무원 및 비(非)공무원 관련현황 비교 >

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기간제, 일용직 등
근무기간	정함 없음(정년)	정함 없음(정년)	통상 1년 이내
채용 신체 검사	결격 사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규정 준용 (일부 기관·직종 예외)
	구제 방법	임용 유예기간(2년)내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능 시 치료 후 임용	없음
	비용 부담	구직자 부담 <동 규정 제6조(수수료)>	구직자 부담 (채용절차법 위배)
질병에 따른 재직자 해고사유	없음(신분보장) 단, '휴직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 면직사유로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 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 기관별 상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4

건강검진과 채용 신체검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

- 국가는 성별·연령별 생애주기와 질환별 발병 통계를 기준으로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 소요예산만 한 해 약 7천5백억원에 달함
 - 특히 취업 연령층인 성인기(19~64세) 건강검진은 일반검진 및 암 검진이 주기적으로 시행 및 그 결과가 축적되고,
 -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검사항목 또한 채용 신체검사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각급 기관이 구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신체검사를 요구
- 일반건강검진 지정기관(전국 6,234개/'21.1월 기준) 중 국립중앙 의료원을 포함한 43개 공공의료원의 건강검진 및 채용 신체검사 항목·범위 등을 살펴보면
 - 진찰(문진), 영상검사(흉부방사선)은 모두 동일하였으며,
 - 계측검사(키, 몸무게,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등)의 경우 대부분 동일하나 절반가량의 의료원(47.6%)은 채용 신체검사에 색신검사*를 추가
 - * 색맹, 색약 등 색구별 능력을 판별하는 검사
 - 소변검사 및 일반 혈액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별 일부 기관이 차이가 있으나, 목표 질환을 검사하는 항목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 * [예시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제외 ▶ (요검사) 요잠혈 추가
 - 콜레스테롤 4종 검사의 경우 채용 신체검사에서 미실시(35.8%), 일부 검사(54.7%), 4종 모두검사(9.5%)로 나타남
 - B형간염 검사는 신체검사에서 64.2%의 기관이 검사를 실시 중이나, 간염 여부만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사유가 아님

- 그 외 채용 신체검사시 정신건강검사 미 실시(88%), 구강검진 미 실시(97.6%), 마약 등 약물검사(TBPE) 미 실시(88.1%)로 조사됨

- 이와 같이 건강검진 및 채용 신체검사 항목별 조사 결과로 볼 때 두 검사 모두 대부분 공통된 목표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 일부 항목(구강검사 등)의 경우 건강검진이 많은 경우도 나타남

※ 검진비용 기준 : 일반 신체검사(3만원) < **일반 건강검진(3.5만원)** < 공무원 신체검사(4만원)

< 공공의료원의 건강검진 및 채용 신체검사 비교(총 43개 의료기관) >

☞ 건강검진 검사 대비 채용 신체검사에서 ■ 추가된 항목, ■ 제외된 항목'

일반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구분	검사항목	목표질환	검사주기	공무원(42개 기관)	일반(36개 기관)
진찰(문진)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일반 및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모두동일(100%)	• 모두동일(100%)
계측검사	키, 몸무게, 체질량, 허리둘레	비만/복부비만		• 모두동일 22개 기관(52.4%)	• 모두동일 19개 기관(47.2%)
	시력, 청력	시각, 청각		• 색신 추가 20개 (색맹, 색약 판별)	• 색신 추가 17개 (색맹, 색약 판별)
	혈압측정	고혈압			
영상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폐결핵, 흉부질환		• 모두동일(100%)	• 모두동일(100%)
소변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 모두동일 7개 기관(16.6%) • 요검사 일부추가 35개 기관 (요잠혈, 요당, 요백혈구 中)	• 모두동일 8개 기관(22.2%) • 요검사 일부추가 28개 기관 (요잠혈, 요당, 요백혈구 中)
혈액검사	①혈색소	빈혈 등		• 모두동일 16개 기관(38%) • CBC 일부추가 26개 기관 (Hct 등 혈액검사 中) • 일부검사 제외 28개 기관 (②, ⑤~⑦ 항목 中)	• 모두동일 17개 기관(47.2%) • CBC 일부추가 26개 기관 (Hct 등 혈액검사 中) • 일부검사 제외 25개 기관 (②, ⑤~⑦ 항목 中)
	②공복혈당	당뇨병			
	③AST(SGOT)	간장질환			
	④ALT(SGPT)				
	⑤감마지티피				
	⑥혈청크레아티닌	신장질환			
	⑦신사구체여과율				
구강검진	육안 진찰 및 상담	구강건강	• 검사(문진) 1개 기관 • 검사 제외 41개 기관(97.6%)	• 검사(문진) 5개 기관 • 검사 제외 31개 기관(86.1%)	

일반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구분	검사항목	목표질환	검사주기	공무원(42개 기관)	일반(36개 기관)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이상지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15개 기관(35.8%) • 일부 검사 23개 기관(54.7%) • 모두 검사 4개 기관(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7개 기관(19.5%) • 일부 검사 24개 기관(66.7%) • 모두 검사 5개 기관(13.8%)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		B형간염	만 4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26개 기관(61.9%) • 검사 16개 기관(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24개 기관(66.6%) • 검사 12개 기관(33.4%)
정신건강검사(PHQ-9검사)		우울증	만 20세~70세 해당연령 10년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37개 기관(88%) • 검사(문진) 5개 기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제외 33개 기관(91.6%) • 검사(문진) 3개 기관(8.4%)
일반건강검진 미대상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검사(TBPE) 추가 기관 5개(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독검사 3개 기관(8.3%)

※ 일반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공공의료원 43개소 현황('21.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요검사(목표질환)** : 요잠혈(신장질환), 요당(당뇨병), 요백혈구(요로감염) 등
- **CBC검사(혈액검사)** : 검사 범위에 따라 빈혈, 혈액질환, 적혈구 증가증 등 진단

- 또한 채용기간이 짧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일부는 동일한 해에 건강검진과 채용 신체검사를 둘 다 받아야 하는 고충 발생
 - 혈액검사 등 신체검사(건강검진)를 위해 8시간 공복상태 필요, 의료기관 방문·검사 등 시간소요로 구직자에게 지나친 부담
- 그리고 짧게는 1~2일에서 몇 개월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검사 비용 부과, 채용서류 제출 등으로 구직 장벽을 높임

《 관련 민원사례 》

- ▣ 학교에서 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루 대체인력이고 일당이 8만원 인데, 3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오라고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함.(국민신문고, 2018.11)
- ▣ 학교 방역지원인력에 지원하여 면접 후 인사담당자가 급하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병원에서 일반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지원을 포기함. (국민신문고, 2020.6.)

5 국민생각함 설문 분석결과

□ 설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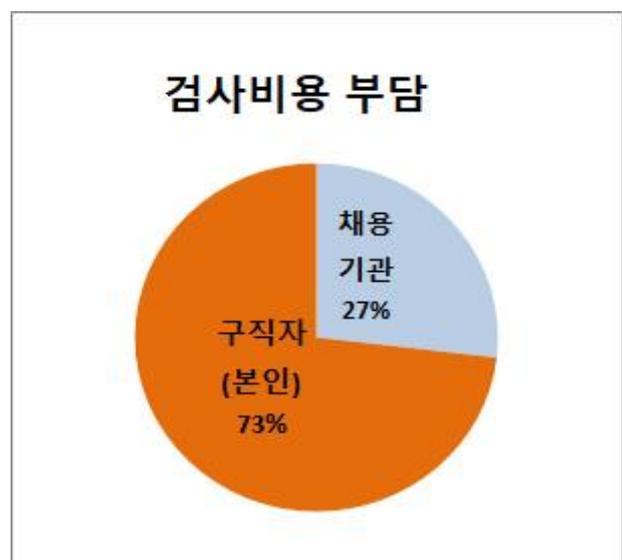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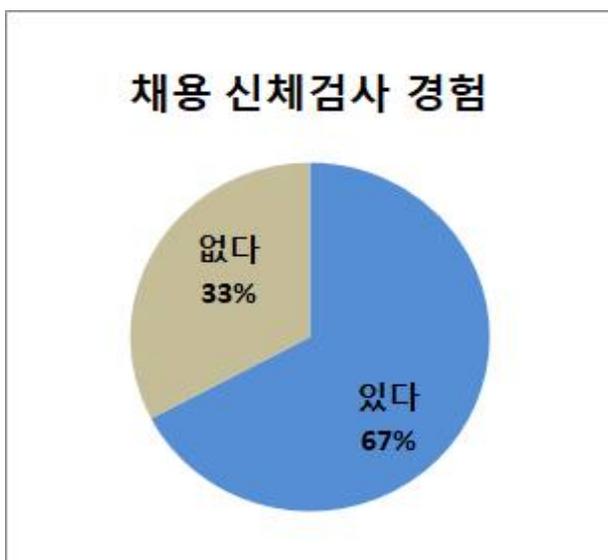
- 설문제목 : '부담되는 채용 신체검사,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없나요?'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설문기간 : '21.6.7(월).~6.20.(14일) / 설문참여 : 총794명(조화: 3,794명)
-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
- 설문내용 : 채용 신체검사 경험, 인식도, 건강검진 활용안 등 13개 문항

□ 설문 응답결과

1. 응답자 채용 신체검사 경험

○ 구직 활동 중 채용 신체검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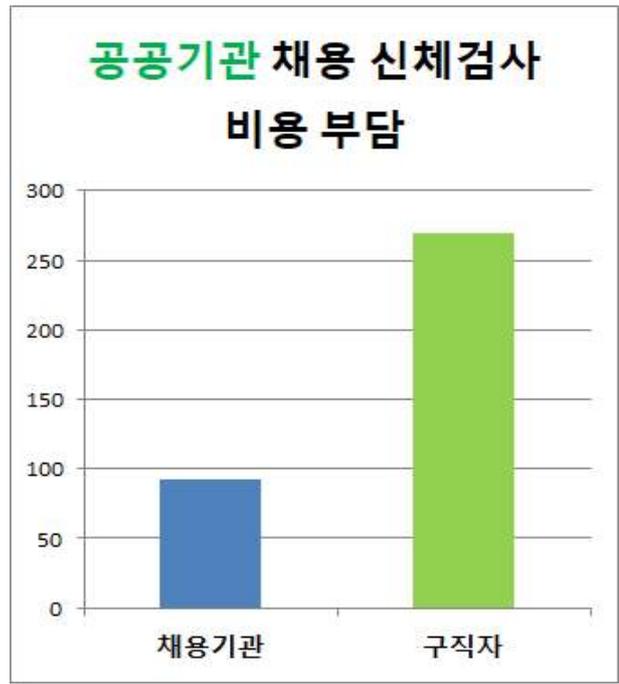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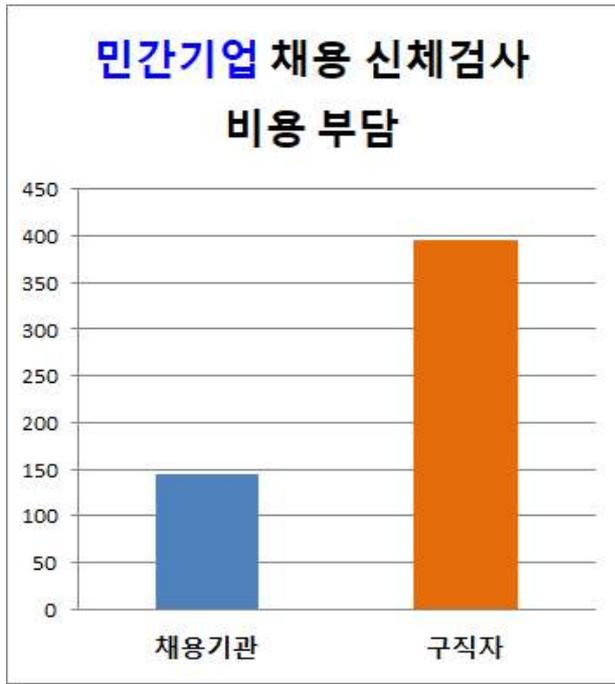
- 총 794명의 응답자중 민간기업 67.3%(534명), 공공기관 44%(349명)



※ 총 응답자(794명)의 경험 수치이며, 채용기관의 신체검사 제도운영 여부 수치는 아님

○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체

- (민간기업) 채용기관 27%(145명), 구직자 73%(395명)
- (공공기관) 채용기관 25%(92명), 구직자 75%(270명)



○ 해당 채용 직종

- (민간기업) 정규직 58.3%(314명), 비정규직 41.7%(225명)

질문 3. [필수] 해당 채용 직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1. 정규직	314명(58.3%)
보기2.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등)	225명(41.7%)

- (공공기관) 공무원 47.6%(168명), 기간제근로자 52.4%(185명)

질문 6. [필수] 해당 채용 직종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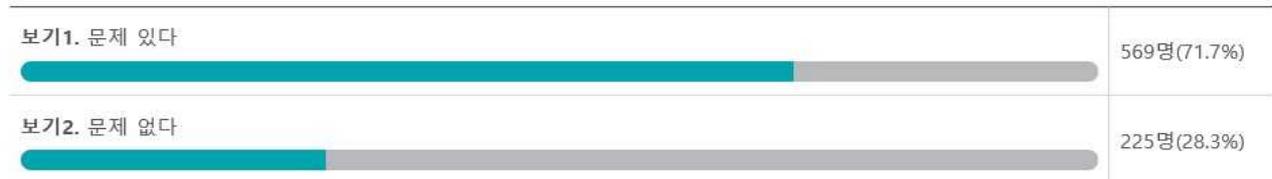
보기1. 공무원(구 무기계약직)	168명(47.6%)
보기2. 기간제근로자 등	185명(52.4%)

2. 현행 '채용 신체검사 제도'에 대한 인식도

○ 채용기관이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에 대한 인식

- '문제 있다'가 71.7%로 과반수 이상 응답

질문 7. [필수]채용기관이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신체검사 포함)을 부담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



- '문제 있다'고 답변한 이유로 '비용·시간 등의 부담 44.2%', '사무직 등은 질병자도 업무 가능 27.7%', '질병으로 고용제한 우려 27.4%' 순

질문 8. [필수]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항목까지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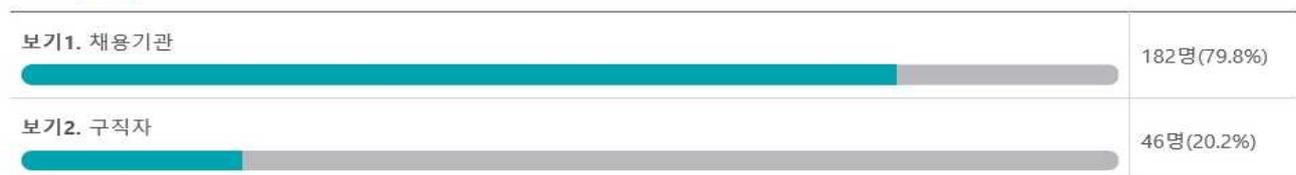


※ '보기4(주관식 답변) 6명

▲ 개인정보 유출우려 ▲ 신체검사는 채용에 영향 없음 ▲ 건강검진과 다를 바 없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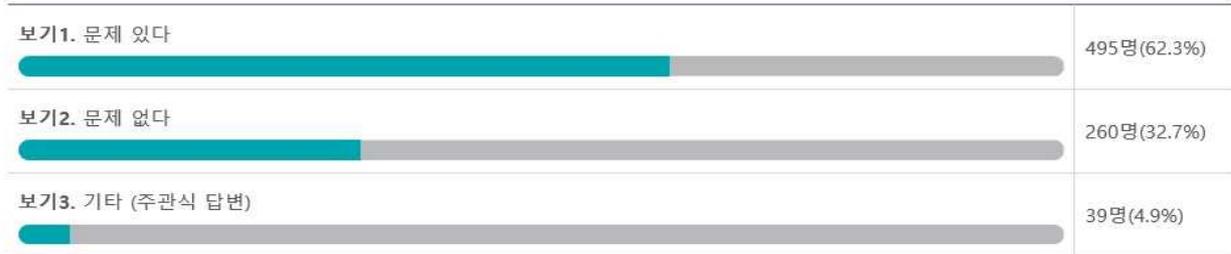
- '문제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은 '채용기관 79.8%', '구직자 20.2%'로 '채용기관의 비용부담'이 월등히 높음

질문 9. [필수]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채용 신체검사 결과'의 채용여부(합격 또는 불합격) 반영에 대한 인식
 - '문제 있다'가 62.3%로 과반수 이상, '문제 없다'는 32.7%, 기타 4.9%

질문 10. [필수]채용기관이 구직자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합격 또는 불합격)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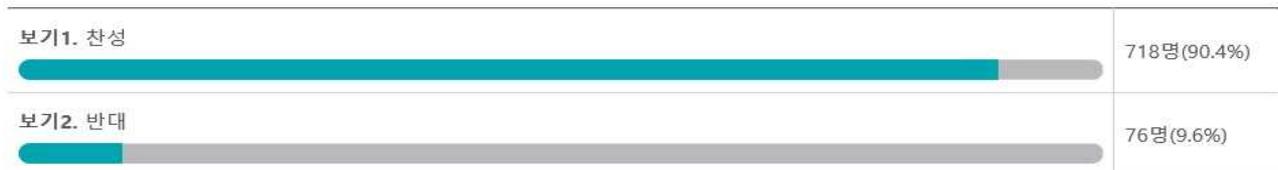
※ '보기3(주관식 답변) 39명

- ▲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문제없다 ▲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제없다
- ▲ 전염병 등 간염 위험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등

3.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에 대한 인식도

-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 '찬성'이 90.4%로 대부분이며, '반대'는 9.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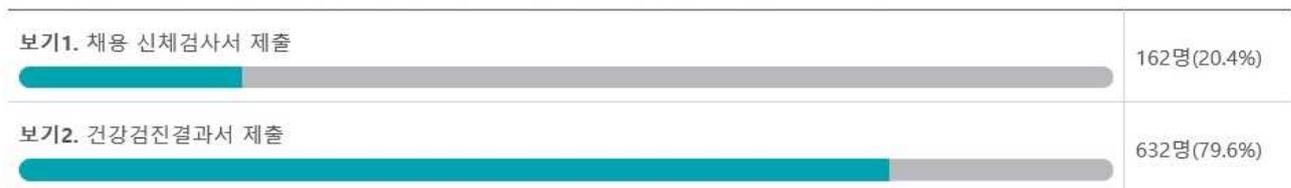
질문 11. [필수]채용 신체검사 대신 2년에 한번 무료로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면 선택은?

- '건강검진 결과서'가 79.6%로 높고, '채용 신체검사서'는 20.4%

질문 12. [필수]채용기관이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서' 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귀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비용부담은 채용기관이 하나,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은 소요됨



IV. 개선방안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 (채용 신체검사 제도를 폐지할 기관) 관련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신체검사 제출 규정 삭제 및 제출요구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제도를 운영할 기관) 기관별 비공무원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사용자 부담을 관련 인사규정에 명시
 - 직무 수행에 신체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대상 직종, 필요 검사 항목, 검사 결과 부적합자의 구제방안' 등을 마련
 - 단, 사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이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최소화 및 검사결과의 채용여부 반영 금지
- ⇒ (행정기관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채용업무 세칙 등 관련 사규」에 반영
-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속기관 관련 규정에도 반영하여 근로자 채용 시 일관된 기준 적용 하고, 신체검사 운영 기준을 소속기관 및 부서별 인사 담당자에게 교육·전파
 - 또한 신체검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속 부서·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신체검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 (전 기관)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 반영 및 부서 담당자 교육 등 지침 전파

- 채용기관(공공 및 민간)이 '신체검사 비용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 구체화
 - '구직자 신체검사비용 부담'은 채용절차법에 위배됨에도, 대다수 채용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운영중이며,
 - 특히 서류·면접에 합격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서를 요구, 채용이 거의 확정된 근로자가 법규 위반 신고 등은 어려운 실정
 - 따라서 해당 채용절차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 반영

현행	개선안(예시)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가. 개요 (내용생략) 나. 채용심사비용의 정의 및 범위 (내용생략) <u><신설></u>	1.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가. 개요 (내용생략)(현행과 같음) 나. 채용심사비용의 정의 및 범위 (내용생략)(현행과 같음) - 구인자가 채용과 관련한 '채용 시 건강진단, 채용 신체검사 등'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나,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근로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할 필요

⇒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반영

⇒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p>제8조(준용규정)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8조(준용규정)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③ 퇴직한 기간제교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 면제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 단서 중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퇴직한 기간제교원”으로, “국가공무원”은 “기간제교원”으로 본다.</p>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합격/불합격’ 판정이 있는바, 이를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 과도하게 준용하여 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관행 개선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무원 직무에 대한 적격판정으로, 타 직종에 일률적 적용은 부적절
 - 따라서 사무직 등과 달리 해당 업무 수행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근로자)에 대해서만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 그 외에는 과도한 결격사유를 없애, 국가 고용정책 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에게 최대한 구직기회를 제공
- ⇒ (행정기관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채용업무 세칙 등 관련 사규」에 반영

< 개선안(예시)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준용하는 규정 등 삭제 >

- ① 각급 기관의 해당 인사관리규정(훈령, 예규, 조례, 사규 등)에 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규정
- ②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에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명시한 규정
- ③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통보 시 공무원 신체검사서 만을 인정한다는 규정

4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사무직 등)는 가능한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회적 비용절감 및 구직자 편의 도모
- 최근 검진 대상연도* '건강검진 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 받아 근로자 건강관리 자료 등으로 활용
- *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만 해당

< 개선안(예시) >

제00조(신체검사)

- ①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채용업무 세칙 등 관련 사규」에 반영

- 채용기관 및 구직자가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제공
 -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및 신체검사서 양식의 '검진결과 통보서' 마련
 - 국민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건강검진 결과 활용도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발급 시스템 마련

< 개선안(예시)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검진 판정일		제출처(기관명)	발급 전 수검자가 입력

구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계측검사	시각이상	시력(좌우)	/ <input type="checkbox"/> 교정
	청각이상	청력(좌우)	/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질환의심 (40dB 이상)
	고혈압 (수축기/이완기)	/ mmHg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유질환자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120-139 또는 이완기 80-89) <input type="checkbox"/> 고혈압의심 (140 이상 또는 90 이상)

혈액검사	빈혈 등	혈색소(g/dL)	남 13-16.5 여 12-15.5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빈혈 의심
	당뇨병	공복혈당(mg/dL)	100미만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유질환자 <input type="checkbox"/> 공복혈당장애 의심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의심
	신장질환	혈청 크레아티닌(mg/dL)	1.5이하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신장기능 이상 의심
		신사구체여과율 (e-GFR) (mL/min/1.73m ²)	60이상	
	간장질환	AST(SGOT)(IU/L)	40이하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간기능 이상 의심
		ALT(SGPT)(IU/L)	35이하	
감마지티피(γGTP)(IU/L)		남 63이하 여 35이하		

요검사	요단백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계 <input type="checkbox"/> 단백뇨 의심
영상검사	흉부촬영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성 폐결핵 <input type="checkbox"/> 질환의심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건강검진 종합결과	
판정	<input type="checkbox"/> 정상A <input type="checkbox"/> 정상B(경계) <input type="checkbox"/> 일반 질환의심 <input type="checkbox"/> 유질환자

2021년 00월 00일

이 통보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건강검진용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법률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V. 조치사항 등

- 대상기관 : 중앙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 2월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①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 (미운영·폐지 기관) 관련 규정·공고에서 규정 삭제 - (운영 기관) 비용의 사용자 부담 명시 및 관련규정 정비 ⇒ 기관별 해당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전 기관
	○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 반영 및 지도·감독 ⇒ 기관별 해당 「인사관리 규정」 개정(미운영 기관 포함)	
	○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 구체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 반영	고용노동부
②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규정 마련 ⇒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도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반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 비공무원 근로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등 결격사유 규정 개선 -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만 필요시 별도 규정 마련, 사무직 등 근로자는 최대한 구직기회 보장 ⇒ 기관별 해당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전 기관
④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사무직 등)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 기관별 해당 「인사관리 규정」 개정	전 기관
	○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 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마련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발급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 보험공단

※ ① 과제의 '신체검사 미운영·폐지' 선택 기관은 과제 이행시 ③~④과제는 해당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준용규정)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정본입니다.

2021. 7. 20.

국 민 권 의 위 원



ACRC